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⑩ - 가산면 금현리 고인돌

보존상태 양호 고인돌 연구 자료 가치 높다

청동기시대 북방식 지묘로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



최 중 규
포천문화유적 회장

- 지정번호: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47호
- 지정년월일: 1983.9.19
- 시대: 청동기 시대
- 소재지: 가산면 금현5리 304-2
- 규모: 563cm×478cm×45cm
- 재료: 화강암
- 비고: 북방식 지묘



포천시 가산면 금현5리 304-2번지에 소재한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 47호 금현리 고인돌.

고인돌의 형식은 탁자식 고인돌로 낮은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였다. 상석은 화강암으로 563cm×478cm×45cm의 규모이며 둘레는 16m로 판석형이다. 고인돌의 장축은 남-북 방향으로, 상석은 북쪽은 지표에서 75cm 높

이에서 하면이 닿고, 남쪽은 지표에서 113cm에서 상석 하면이 닿기 때문에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으며 특히 북서쪽으로 15°정도 기울어져 있다. 묘실의 크기는 165cm×139cm×180cm이며, 묘실 바닥은 특별

한 사실이 없다. 지석은 동쪽 장벽이 243cm×190cm×53~30cm이고, 서쪽장벽은 246cm×190cm×22~27cm이다. 남쪽 단벽은 90cm×170cm×25cm이며 북쪽 단벽은 130cm×160cm×22cm이다. 금현리 고인돌은 보존 상태가

완벽하며 그 규모도 매우 커서 고인돌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금현리에는 자연지명이 권돌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서 주위 고인돌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모두 멸실된 상태이다.

자·유·기·고



김 영 식
의정부보훈지청장

‘순국선열의 날’의 의미와 제언

가로변에 셋노란 빛으로 해말 간 미소를 띠고 있는 은행잎이 바람결에 흩날리고 곱게 물든 가을의 정취가 서서히 저녁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11월 중순이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11월은 지금부터 100년 전, 우리의 슬픈 역사가 오롯이 담겨있는 달이기도 하다.

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이다. 1905년 일제에 의하여 강제된 ‘을사조약’이 체결된 날인 것이다.

당시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정부 참찬

이었던 ‘이상설’을 비롯한 대신들은 조약체결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상소를 올렸으나 조정의 권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에 분개하여 당시 시종무관 이었던 ‘민영환’이 자결하였으며 이어서 수많은 대신들과 가료들이 죽음으로써 일제에 항거하였고 전국 각지에 의병운동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러 수많은 유국인 사들이 희생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정부에서는 1997년 뒤늦게나마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독립정신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하여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여 매년 추모행사를 거행해 오고 있다.

독립유공자애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순국선열의 의미를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광복 이전에 순국하신 분들로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제의 식민통치하에서 조국의 독립과 국권회복을 위하여 항거하다가 희생되신 모든 분들을 통칭하여 ‘애국선열’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요즈음 같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때 일수록 지난날 나라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조국의 독립과 국권회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 선열들의 뜨거운 애국정신과 호국정신이 애뜻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지난 6월 ‘국가보훈처’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국민의 보훈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유공자가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얼마나 기

여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는 87.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보훈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는 17.5%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 ‘순국선열의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지금부터 100년 전 일제의 지배와 수탈 속에서 시달리던 우리 조상들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몸부림쳤던 애절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그러하여 우리사회가 바르고 떳떳한 도덕적 원기를 회복하여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이것만이 순국선열들의 뜻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 특별기획 ●●●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②

경찰수사권 보장과 독립방안

검사의 형사소송법상 지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대륙법계국가에서 검사는 소추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과 재판의 집행권도 가지고 있지만, 영미법계국가인 미국의 검사는 대배심에 의한 제한을 받는 범위에서 소추권을 행사하거나 대배심의 보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소추 및 공소유지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재판의 집행은 관여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수사의 주재자도 원칙적으로 경찰이며, 검사는 특정분야의 수사를 행하거나 실무상 경찰과의 긴밀한 관계에 의하여 수사를 지휘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검사에게 소추권과 재판의 집행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이 일차적 수사의 주체이고 검사는 이차적이고 보충적인 수사의 주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검사는 프랑스와 독일의 검사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검사는 수사의 주체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 또는 수사를 보조하는 수사보조기관이다. 따라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상호협조의 관계가 아닌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상명하복관계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행법은 수사사무의 보고의무와 정보보고의무, 수사중지명령권과 체임 요구권을 두고 있으며, 긴급체포시 검사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서의 증거능력에 있어서도 차이를 두고 있다.



노 영 민
포천경찰서

위해 노력해 온 것 중의 하나가 정부수립 초부터 논의해 왔던 경찰수사권독립의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실현하려고 대한경우회·경찰발전방향연구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보였으나, 국민적·국가적 관심을 얻지 못한 채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처럼 무관심해진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대하여 새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에서 여당 당론으로 이를 결정하고 여론추이를 살피고 있으며, 자치경찰제에 대한 기대와 함께 경찰의 수사권독립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는 관측이 무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이론의 타당성 검토는 도외시키고 권한적 이해관계에 치우쳐 파외게임의 양상을 보이다가 종래에는 힘이 약한 경찰의 양보로 그 논의가 중단되어 왔으며, 그 논의 자체도 정치활동과 밀착된 힘이 강한 쪽의 압력으로 인해 급기시 되어 온 경향이 많았다. 또한 법률개정이 법무부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국회법사위 소속 위원회 법조계 출신위원이기 때문에 설 불리 거론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여 물밑 작업이나 하는 실정에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물밑에서 대처하는 상황을 벗어나 정점을 공론화·활성화하여 합당한 결론을 추출하고, 관련당사자는 이론으로 무장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홍보로 땀띠이 국민 앞에 나서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찰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치안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다음호에 계속>

16년 동안 한결 같은 맛을 제공하는 일번지 암소이동갈비

1층 돼지갈비, 암소이동갈비

신메뉴 출시

2층 풍천민물장어



자연산장어 민물장어 전문



250석 보유, 연말연시 예약중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49-4
대표 김애화
031)542-1887~8